

2020. 4.
Vol.49

Blue*note*

블루노트 통계 Statistics



청소년 '일 경험' 제도 운영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I: 대학교 실습학기제를 중심으로

김승경 선임연구위원
최정원 부연구위원

개요

- 조사목적** ▶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표적인 일 경험 제도인 대학교 현장실습은 산학협력을 통해 실무능력을 겸비한 인력 양성이라는 목표하에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확대되어왔음. 특히, 2011년부터는 대학정보공시 항목에 각 대학의 현장실습 운영 현황이 포함되었고 현장실습 현황이 정부 재정지원사업 및 대학평가 등에 평가항목으로 활용되면서 현장실습 이수생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나, 그간 현장실습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 파악은 이루어지지 않았음. 이에 대학교 현장실습이 실습생에게 미치는 효능과 영향에 주목하면서 현장실습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대학교 현장실습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음.
- 조사대상** ▶ 2018년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 사이에 전일제 형태(1일 6시간 이상)로 4주 이상 연속적으로 운영된 실습학기제를 이수한(대학정보공시 대상) 전국의 대학교 현장실습 유경험자 1,512명(일반대 665명, 전문대 738명, 기능/교육/산업대 109명)
- 조사방법** ▶ 휴대전화를 기반으로 한 모바일 웹 조사(CAMI)
- 조사기간** ▶ 2019년 6월~8월

1 현장실습¹⁾ 정의 및 운영 현황

- 현장실습은 실습기관 현장에 투입되어 학습을 함께 하는 교육과정으로, 산학협력을 기반으로 해당 전공분야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학생 전공과 관련된 실무 실습과정으로 운영(「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제5조 제2항)하고 있음.
- 현재 교육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장실습은 크게 현장실습 수업과 실습학기제로 구분할 수 있음. 이 중, 실습학기제로 운영되는 현장실습은 학기단위로 일정기간 연속(1일 6시간 이상의 전일제 형태, 4주 이상)하여 운영되는 현장실습(「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제2조 제2항)으로, 대학정보공시 대상이 됨. 현장실습 개시 전에 실습생-학교-실습기관 간 문서로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며, 실습기관 수요조사, 실습생 사전교육, 상해보험 가입 등 보다 엄격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교육부, 산학협력정책연구소, 2017:17), '현장실습' 과목으로 학점을 부여하게 됨.
- 2016~2018년 대학정보공시를 통해 산출된 현장실습 참여 대학생의 수는 약 15만 명 정도로 전체 대학생 수의 5% 정도에 달함.²⁾ 해마다 약간의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전문대학의 경우 약 8만 명 이상의 학생이, 4년제 대학의 경우 약 7만 명 내외의 학생이 현장실습에 참여하고 있음.

표 1 현장실습 운영현황 (단위: 명, %)

구분	연도	실습이수 학생수	보험가입 학생수	참여 기업체 수	실습지원비 수령학생수	보험 가입률	실습지원비 수령률
전문 대학	2016년 공시	86,771	81,743	50,589	16,543	94.2	19.1
	2017년 공시	87,555	87,570	50,498	54,475	100.0	62.2
	2018년 공시	83,771	82,681	48,464	52,362	98.7	62.5
	2019년 공시	73,680	72,856	41,815	45,052	98.9	61.1
대학	2016년 공시	70,843	55,729	44,916	21,993	78.7	31.0
	2017년 공시	71,066	64,537	46,001	42,285	90.8	59.5
	2018년 공시	69,039	65,282	45,151	42,514	94.6	61.6
	2019년 공시	71,245	67,905	46,240	44,828	95.3	62.9

출처: 대학알리미 <http://www.academyinfo.go.kr/index.do> (2019.10.15,인출).

산학협력 공시정보(12-카, 현장실습 실무형 교육과정 개설현황 중 현장실습 운영현황) 자료를 재구성하였음.

2016년 공시자료는 대학알리미 <http://www.academyinfo.go.kr/index.do>의 2019.1.28. 인출자료임.

1) 본 실태조사에서 다뤄진 현장실습은 대학정보공시 대상에 해당하는 실습학기제 형태의 현장실습에 한정하였음. 즉,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근거해 직업교육 영역에서 실시하는 현장실습, 전문 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 요건에 해당하는 현장실습 등 공시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 현장실습은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2) 2018년 대학정보공시에 따르면, 전문대 학생은 약 692,800명, 4년제 대학생은 2,346,769명으로 전국의 대학생은 총 300만 명 내외임.

2 현장실습 이수동기

- 조사대상자 중 졸업 후 전공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등의 실무능력을 습득하고 향상시키는 등 현장실습의 운영 취지에 부합하는 동기(전공분야의 실무능력 향상 31.1%, 경력 개발 16.6%, 학업 성취 4.4%)를 가지고 현장실습에 참여한 경우는 전체의 약 52%에 해당함.
- 그러나 졸업 필수 이수 학점 취득, 취업연계, 실습비 수령 등 실습 제도의 운영 취지와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동기로 실습에 참여하는 경우도 48%에 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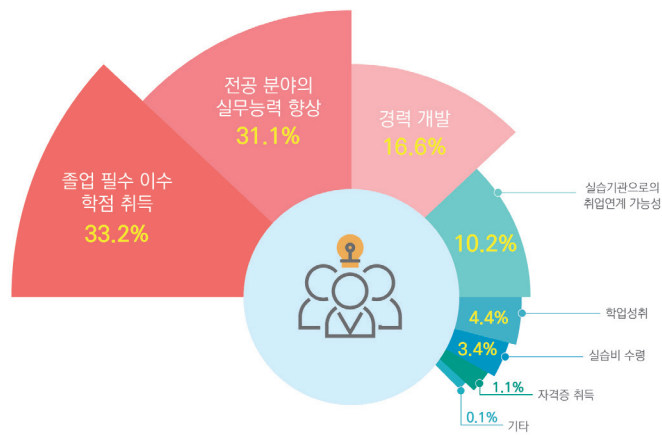


그림 1 현장실습 참여 동기 (단위: %)

3 실습업체 섭외 및 연계

- 실습생의 25.5%는 학교와 무관하게 스스로 섭외한 실습업체에서 현장실습을 수행하였음. 이는 현행 대학정보공시 지침과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반하는 방식으로 실습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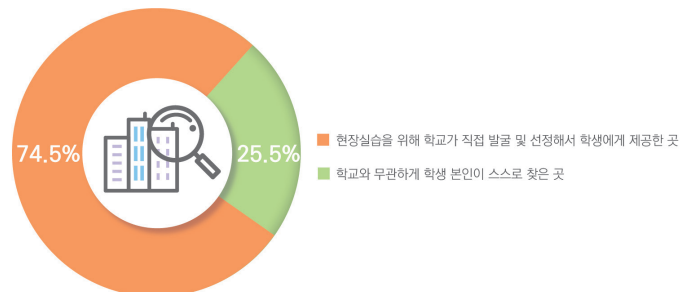


그림 2 실습업체 섭외 경로 (단위: %)

- 다만, 학생이 스스로 실습업체를 섭외했다라도 학교가 해당업체의 실습 운영 계획서를 검토 후 실습을 승인한 경우가 73.9%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됨.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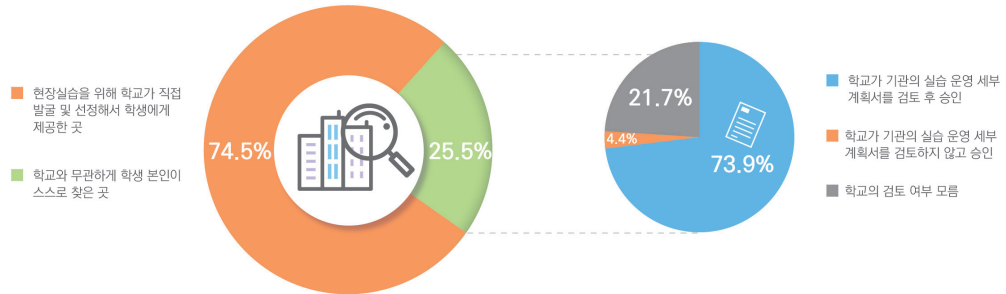


그림 3 실습업체 섭외 경로에 따른 학교의 실습업체 적격 여부 검증 실태 (단위: %)

- 학교를 통해 실습업체를 소개받은 경우, 학교가 실습생의 전공 분야, 적성, 희망사항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실습생과 업체를 연계하는 '정석형 연계'는 52.9%에 불과하였음. 나머지 47.1%는 실습생이 알아서 업체를 선택하는 '방임형 연계'나 학교가 실습생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업체에 임의 배정하는 '무작위형 연계'에 해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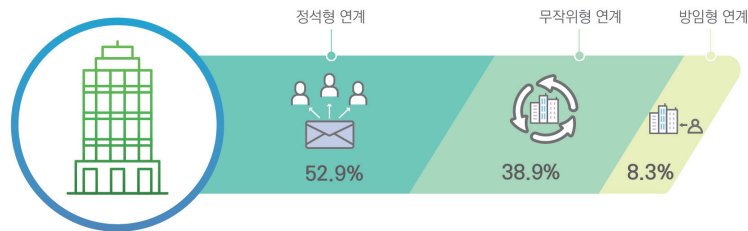


그림 4 실습업체 연계 방식 (단위: %)

4 사전교육 제공

- 대다수의 실습생은 학교 또는 실습업체로부터 현장실습 협약서 작성 및 협약 내용 전반에 대한 정보, 실습기관 및 근무부서에 대한 정보, 실습 조건에 대한 정보 등 실습기관과 조건에 관한 사전교육을 제공받았음. 그러나 성희롱 예방교육, 상해 및 산재보험 등 현장실습생 보호 차원에서 실시되는 교육과 실습 내용 및 실습 평가방식 등 실질적인 현장실습의 운영내용을 제공받은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3) 대부분의 학교가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상의 단서 조항에 따라 소정의 검증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해당업체의 적격여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졌는지 확인은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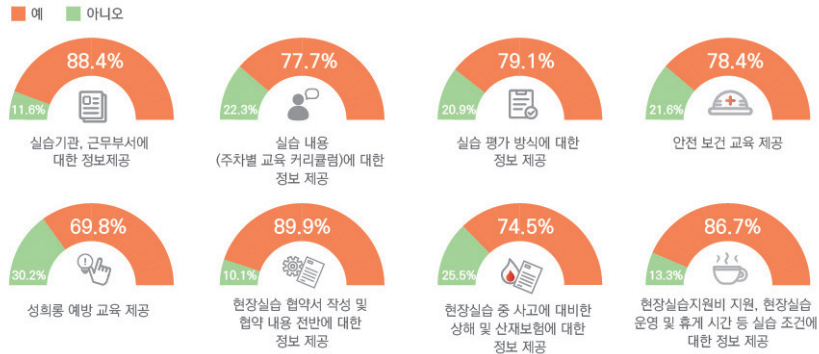


그림 5 학교 또는 실습업체로부터의 사전 교육 이수 실태 (단위: %)

5 현장실습 업무 및 교육담당자 배정

- 실습생의 86.1%는 실습업체가 사전 협의된 실습 운영 계획에 따라 실습업무를 배정했다고 응답한 반면, 13.9%의 실습생은 협의사항과 다른 업무를 실제 현장에서 배정받았다고 응답하여 현장실습이 당초 협의된 내용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줌.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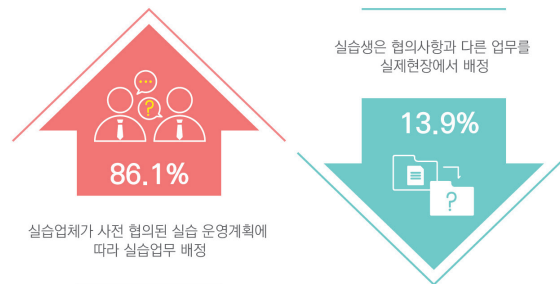


그림 6 현장실습업체의 업무배정 실태 (단위: %)

- 전체 실습생의 88.0%는 교육담당자가 배정된 실습업체에서 실습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응답함. 교육담당자의 배정은 현장실습이 수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12.0%의 실습생이 교육담당자가 없는 실습업체에서 실습을 수행하였다는 것은 규정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4)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따라 실습업체가 실습을 운영하는 동안 실습생의 실습 역량, 전공 적합도, 실습태도 등을 감안해 실습 효과를 제고하고자 실습생과 학교의 동의를 얻어 실습계획과 다른 업무를 실습생에게 배정할 수 있으나, 실습생의 동의 없이 협의사항과 다른 업무를 배정한 경우라면 문제의 소지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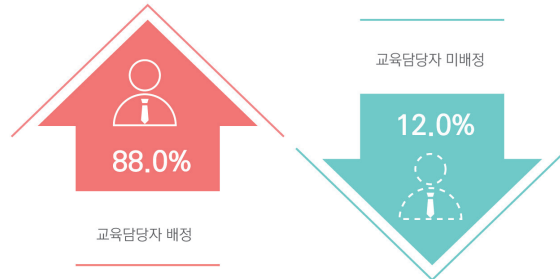


그림 7 실습업체의 교육담당자 배정 상태 (단위: %)

- 교육담당자가 배정된 실습생 가운데 95.5%는 교육담당자가 실습생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였고, 92.6%는 교육담당자가 성실하게 교육업무를 수행했다고 평가한 반면, 교육담당자의 실습 평가 방식(89.2%)과 고충 처리(89.7%)의 경우는 긍정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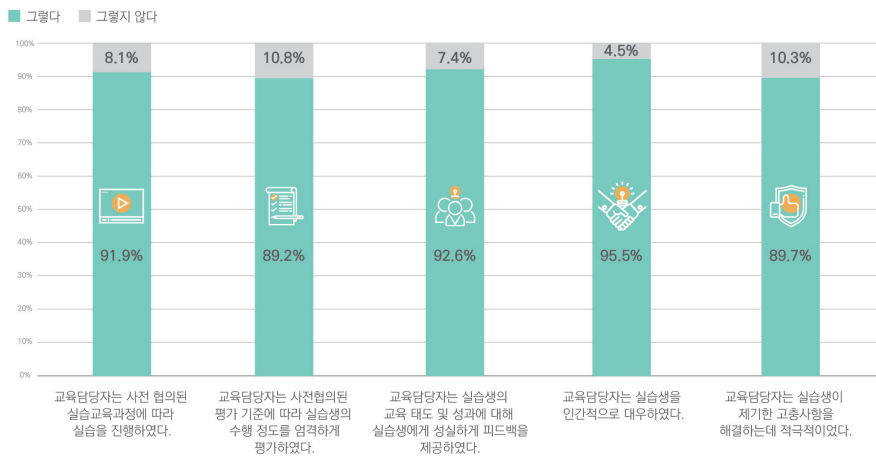


그림 8 교육담당자들의 책무 이행 상태 (단위: %)

6 학교의 지도 점검

- 전체 실습생의 62.4%는 학교가 현장실습 기간동안 실습업체에 대해 중간점검을 수행했다고 응답하였고, 12.0%는 중간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응답함. 그러나 실습생의 25.6%가 학교의 중간점검 수행여부를 알지 못한다고 응답하여 실제 중간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2.0%보다 높아질 개연성이 존재함.⁵⁾

5)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따르면 학교는 현장실습 기간 동안 업체가 사전 협의된 실습운영계획에 따라 교육과정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실습생에 대해서는 실습생이 산업체 현장에서 고충 없이 실습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장지도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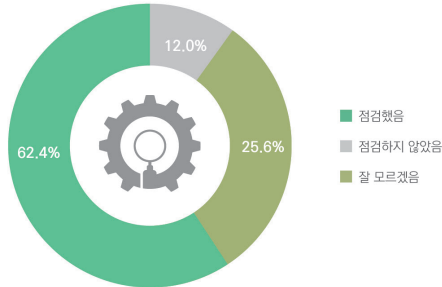


그림 9 현장실습 진행 중 학교의 현장 지도 및 점검 실태 (단위: %)

7 실습지원비 수령

- 전체 실습생 중 70.7%가 학교나 업체로부터 실습비를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들 중 48.3%는 자신이 받은 지원비가 부족하다고 인식하였음.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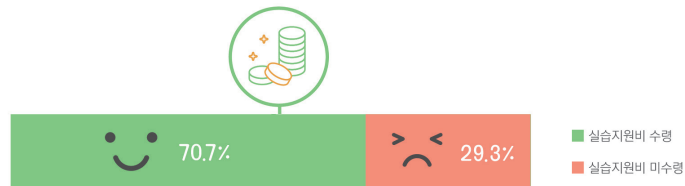


그림 10 실습지원비 수령 실태 (단위: %)

- 실습지원비가 부족하다고 인식한 집단은 월 평균 59.60만 원을, 실습지원비가 적정하다고 응답한 집단은 월 평균 101.68만 원을, 실습지원비가 과도했다고 응답한 집단은 월 평균 160.12만 원을 지급받아 과소집단을 기준으로 적정집단은 1.71배, 과대집단은 2.69배 높은 지원비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남.

— 실습지원비가 부족했거나 과도하다고 평가한 실습생 집단을 대상으로 적정 수준의 실습지원비를 조사한 결과, 평균값이 103.49만원으로 산출됨.



그림 11 실습지원비 적정 여부 (단위: %, 실습지원비 수령자 기준)

6)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따르면, 실습업체가 학생에게 배정한 업무가 수업이 아닌 실질적 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실습업체는 실습생에게 실습지원비를 제공해야 하며, 적정액수는 학교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8 실습생의 고충 및 해소 노력

- 실습기간 중 현장실습과 관련한 고충을 경험한 실습생은 24.3%였음. 이들 실습생들이 가장 많이 불만을 느낀 부분은 '교육 목적과 거리가 먼 근로 중심의 업무 부여'가 22.3%로 가장 높았고, '실습업체의 경직된 조직문화' 17.7%, '실습기관 교육 담당자의 불성실' 11.3%, '현장실습계획서와 다른 실습업무 강제' 10.3%, '현장실습 협약 내용 위반' 8.8% 등의 순으로 파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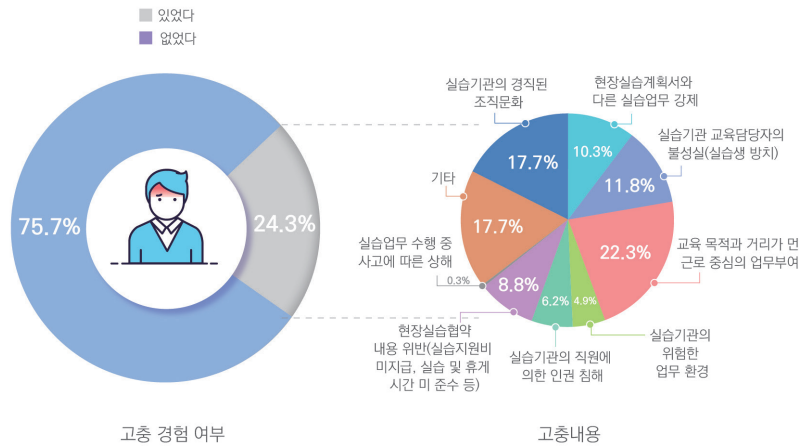


그림 12 실습기간 현장실습 관련 고충 경험 실태 및 고충 내용 (단위:%)

- 그러나 고충을 경험한 적이 있는 실습생 중 41.2%만이 '학교가 실습생의 고충 파악 및 해소를 위해 노력했다'고 응답하여 실습생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학교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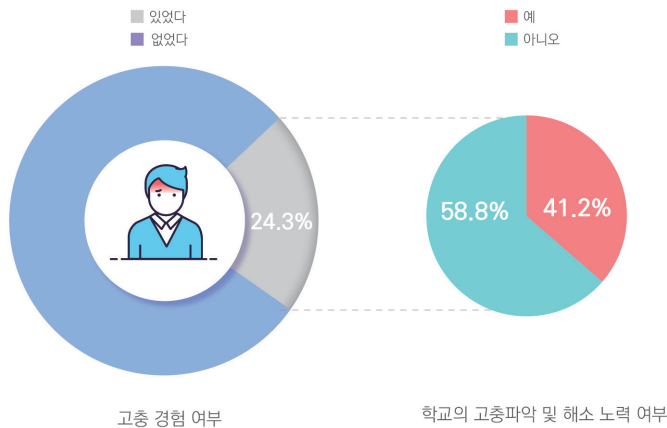


그림 13 실습생의 고충 파악 및 해소를 위한 학교의 노력 실태 (단위: %, 고충 경험자 기준)

9 직무 역량, 경력 개발 개선 및 취업활동에의 기여

■ 과반수의 실습생들이 직무 역량과 경력 개발 모두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한 것으로 나타남.

- 직무 역량의 측면에서 70%에 가까운 실습생들이 '변화에 적응하는 역량', '판단력', '타인과 협업하는 역량'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반면, '문제의 핵심을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해법을 모색하는 역량', '새로운 아이디어를 설계하고 실행하는 역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실습생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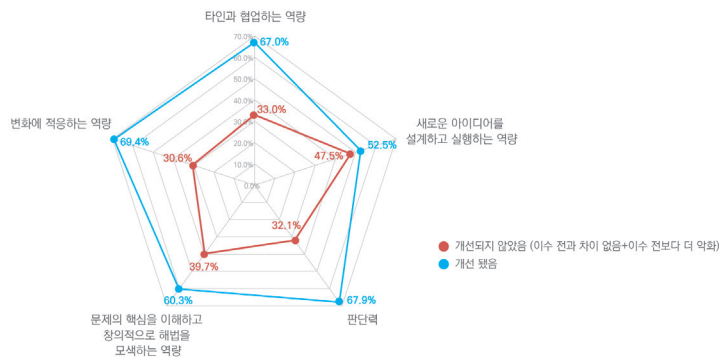


그림 14 현장실습 이수를 통해 실습생이 체감하는 직무 역량의 개선 실태 (단위: %)

- 경력 개발의 측면에서는 '기업(조직)문화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다고 응답한 실습생이 70.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산업체에서 요구되는 직무역량(지식, 기술, 태도 등)에 대한 이해', '현장에서의 전공지식 응용 역량', '진로확신 및 진로 결정', '전공 관련 산업체 직원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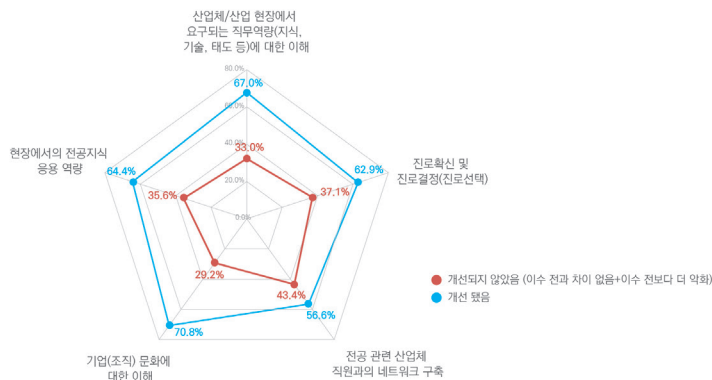


그림 15 현장실습 이수를 통해 실습생이 체감하는 경력 개발의 개선 실태 (단위: %)

■ 실습 유경험자 중 구직활동을 한 경험이 있었던 실습생들 중 80.1%가 취업 연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현장실습이 취업활동에 기여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파악됨.⁷⁾

7) 취업 연계란, 해당 업체로의 취업이 예정(확정)된 상태, 현재 취업 중인 상태, 또는 과거에 취업했던 상태 모두를 포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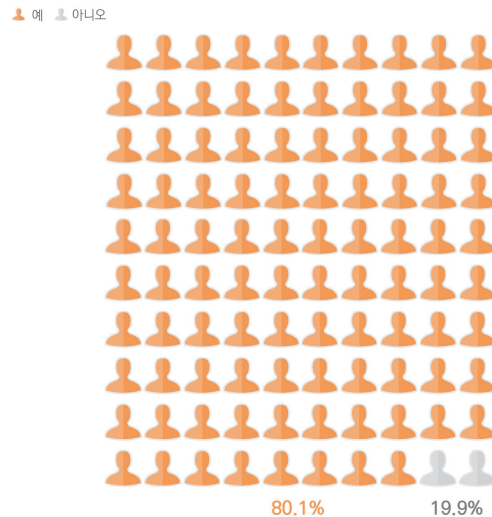


그림 16 현장실습 경험이 취업 및 취업준비에 기여하는지 여부 (단위: %)

10 현장실습의 필요성 및 개선방안

- 실습학기제와 같이 실습기관에서 학기 단위로 현장실습을 수행하는 것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전체 응답자의 78.7%는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는 21.3%에 불과함.



그림 17 전공분야의 실습기관에서 학기 단위의 현장실습 수행 필요 여부 (단위: %)

- 실습기관에서 학기 단위로 현장실습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실습생들은 그 이유에 대해 '현장실습이 취업으로 연계되지 않아서'가 32.3%로 가장 많고, '실습업체가 체계적으로 실무 실습 및

교육 과정을 운영하지 못해서' 18.8%, '실습업체가 실습생의 노동력을 부당하게 착취해서' 16.8%, '실습업체가 전공과 무관한 실무를 실습시켜서' 10.2% 등 현장실습업체에서의 부정적 경험으로 인한 응답 등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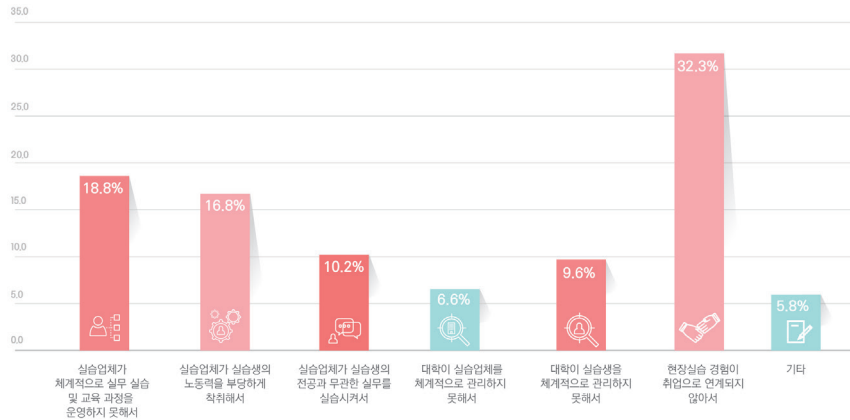


그림 18 전공분야의 실습기관에서 학기 단위의 현장실습 수행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단위: %)

■ 현장실습의 시너지 효과 증진을 위해 학교로부터 관련 교육 및 서비스를 제공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진로 및 직업 상담을 제공받은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실습과 관련된 직업분야에 대한 교육, 실습을 통해 기대될 수 있는 직무 역량 및 경력 개발에 대한 교육, 실습 경험을 활용한 취업 준비 교육(이력서 작성 요령, 면접 요령 등)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러나 학교로부터 후속 교육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실습생의 비율도 20.7%에 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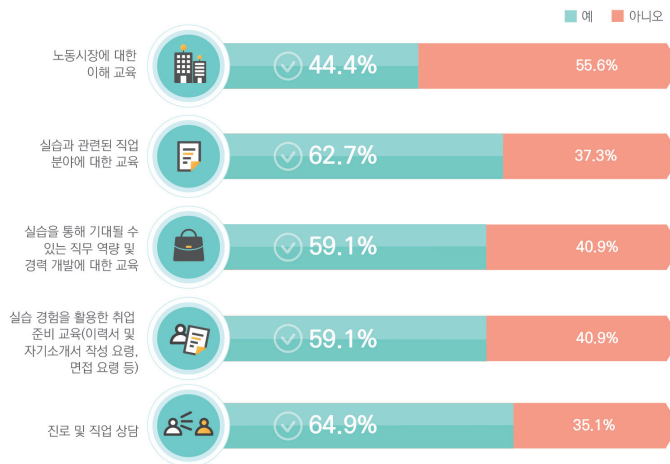


그림 19 현장실습의 시너지 효과 증진에 도움이 되는 교육 및 서비스를 학교로부터 제공받았는지 여부 (단위: %)

- 현장실습의 시너지 효과 증진을 위해 학교로부터 후속 교육과 서비스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실습생의 비율은 해당 교육 및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다르나 적게는 83.3%에서 높게는 91.4%에 달함. 그 중 '진로 및 직업상담'을 중요하다고 응답한 실습생의 비율이 91.4%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실습경험을 활용한 취업 준비교육', '실습을 통해 기대될 수 있는 직무 역량 및 경력개발에 대한 교육', '실습과 관련한 직업분야에 대한 교육', '노동시장에 대한 이해 교육'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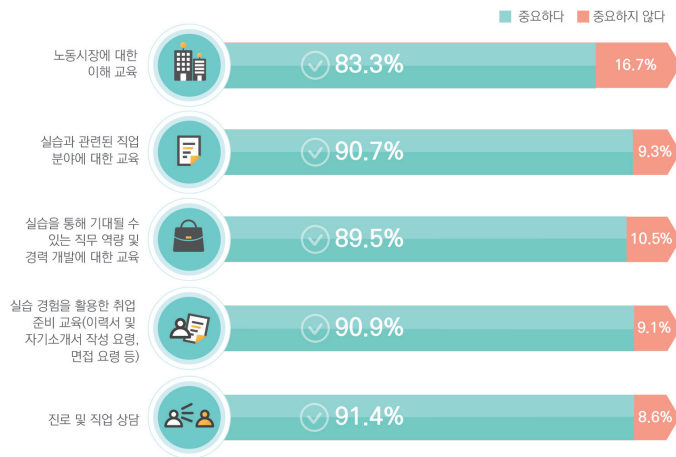


그림 20 현장실습의 시너지 효과 증진에 도움이 되는 교육 및 서비스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단위: %)

- 본 대학교 현장실습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현장실습을 이수한 대다수의 대학생들이 현장실습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고 있으며, 현장실습이 실습생의 직무 역량이나 경력 개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음.
 - 다만, 일부 대학에서는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였고, 실습생에 대한 관리 및 점검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지 않았으며, 현장실습 과정에서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고충이나 사고, 협약사항 등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음.
 - 또한 실습업체에서도 실습계획에 따른 교육과정을 충실히 제공하지 않거나 학생들의 노동력을 부당하게 착취하는 등의 행태가 지속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음.
- 현장실습의 본질적 목적에 부합하는 양질의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양질의 실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대학-실습업체의 인식이 변화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하며, 현장실습이 일회성 교육으로 사장되지 않기 위해서는 학생의 실습 경험의 효능을 극대화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대학이 현장실습을 취업 및 경력 개발, 취업연계 등을 위한 사후교육 및 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